

부 록 I : 인적사고 의무보험제도 현황

(’08.1월 현재 30종)

보험상품	근거법률	가입대상자	보장내용	소관부처	벌칙 등	시행일
자동차 손해배상 책임보험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5	자동차보유자	자동차운행으 로 인한 타인의 신체손해	국토 해양부	1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벌금)	’63.4.4
원자력 손해배상 책임보험	원자력손해배상 법§5	원자력사업자	법률상 배상책임	교육과학 기술부	—	’69.1.24
항공보험	항공운송사업 진흥법§7, 시행규칙§2 및 §3	항공사업자와 자가용항공기 를 운용하고자 하는 자	항공운항 중 발생하는 기체손실, 승객 등에 대한 배상책임, 승무원 및 승객의 신체상해	국토 해양부	5년 이하 징역 또는 100만 원 이하(벌금)	’71.1.12
신체손해배상 특약부 화재보험	화재로인한재해 보상과보험가입에 관한법률§5	특수건물 소유자	화재로 인한 신체 손해	기획 재정부	500만 원 이하 (과태료)	’73.2.6
전문인 배상책임보험	관광진흥법 등 8개 법률	동 법의 적용을 받는 자	전문인 업무로 인한 법률상 배상책임	문화체육 관광부 등	—	’84.4.1
수렵보험	조수보호및수렵 에관한법률§13⑦, 령§12의3	수렵장 안에서 수렵하고자 하는 자	수렵행위로 인한 배상책임	농림수산 식품부	—	’84.7.1
가스사고배상 책임보험	도시가스사업법§ 43①, 고압가스안전 관리법 §25·규칙§53②, 액화석유가스의 안전및사업관리 법§33	가스사업자 및 특정가스시설 사용자	가스사고로 인한 배상책임	지식 경제부	·도시가스: 3,000만 원 이하(과태료)	’84.7.1
					·고압가스: 2,000만 원 이하(과태료)	’84.7.1
					·액화가스: 300만 원 이하(과태료)	’07.4.11

보험상품	근거법률	가입대상자	보장내용	소관부처	벌칙 등	시행일
선원근로자 재해보상보험	선원법§98, 령§32	선원을 고용한 선박소유자	근로자 재해 및 배상책임	노동부	500만 원 이하 (벌금)	'84.9.7
설계/감리 보상보험	건설기술관리법§2 1④, §22의3, §33	설계 등 용역업자, 건설사업관리자, 감리전문회사	설계/감리자의 제3자 배상책임	국토 해양부	-	'88.1.1
화물배상 책임보험	화물유통촉진법§8 및 령§11(별표1)	복합운송 주선업자	법률상 배상책임	국토 해양부	-	'92.6.15
유류오염손해 배상책임보험	유류오염손해배상 보장법§14, 령§7	200톤이상 유류운송 선박소유자	유류 배출로 인한 법률상 배상책임	국토 해양부	-	'93.1.1
유도선사업자 배상책임보험	유도선도선사업법 §33, 령§27	유도선사업자 (해운법 적용대상자 제외)	유도선 사업 관련 법률상 배상책임	행정 안전부	-	'94.1.1
체육시설업자 배상책임보험	체육시설의설치 및이용에관한법률 §29, 규칙§31	체육시설업자	체육시설내 배상책임	문화체육 관광부	100만 원 이하 (과태료)	'94.2.7
건설공사 /조립보험	국가를당사자로 하는계약에관한 법률시행령§53	각중앙관서의장, 계약담당공무 원, 계약대상자	공사중 재물손해 및 배상책임	기획 재정부	-	'97.1.1
승강기 보수업자 배상책임보험	승강기제조및관리 에관한법률 §11의3	승강기보수업자	승강기보수업무 관련 배상책임	지식 경제부	1,000만 원 이하 (과징금)	'97.6.30
사회복지시설 배상책임보험 ¹⁾	사회복지사업법§3 4의2	사회복지시설 운영자	화재로 인한 배상책임	보건복지 가족부	1년 이하 징역 또는 300만 원 이하(벌금)	'03.1.13
수련시설 배상책임보험	청소년기본법§33	수련시설설치· 운영자	수련시설내 신체 상해	문화체육 관광부	-	'05.2.9
수상레저 종합보험	수상레저안전법 §28, 령§19	수상레저사업자	법률상 배상책임, 재물손해 등	국토 해양부	50만 원 이하 (과태료)	'06.3.31
운전학원 종합보험	도로교통법시행령 별표5의3 9호	운전학원 운영자	재물손해, 배상책임, 신체손해 등	경찰청	-	'06.6.1
학원배상 책임보험 ¹⁾	학원의설립운영 및과의교습에 관한법률§4	학원 설립·운영자	수강생의 신체손해	교육과학 기술부	100만 원 이하 (과태료)	'06.9.24

보험상품	근거법률	가입대상자	보장내용	소관부처	벌칙 등	시행일
연구활동 종사자 상해보험	연구실안전환경 조성에관한법률 §14	연구기관의 장	연구활동 중 상해사고	교육과학 기술부	1,500만 원 이하 (과태료)	'06.4.1 ('07.8)
어선원 재해보험 ³⁾	어선원및어선재 해보장보험법§16	어선 소유자	어선원의 신체손해	국토 해양부	-	'04.1.1

주: 1) 별도로 개발된 상품은 없으며, 영업배상책임보험의 특약으로 가입.

2) 가축보험, 농작물재해보험, 풍수해보험, 어선재해보험: 임의보험, 기타 정책성보험: 의무보험.

3) 수협중앙회에서 운영 중이며, 어선원재해보험은 의무보험이나 어선재해보험은 임의보험.

4) 소관부명은 2008년 기준임.

5) 가축보험과 농작물재해보험은 2010. 1. 1 근거법이 농어업재해보험법으로 통합됨.

자료: 금융감독원(2008. 1).

부 록 Ⅱ: 사고유자녀 수 추정을 위한 자료

〈부록 표 Ⅱ-1〉 1992~2009년 각 연도의 연령별 교통사고 사망자 수

(단위: 명)

연도	14세 이하	15~20세	21~30세	31~40세	41~50세	51~60세	61세 이상	불명	합계
1992	1,180	794	2,117	2,219	1,640	1,576	2,053	61	11,640
1993	998	650	1,924	2,017	1,470	1,424	1,851	68	10,402
1994	890	656	1,942	1,996	1,394	1,415	1,748	46	10,087
1995	809	805	2,099	1,916	1,443	1,388	1,806	57	10,323
1996	932	941	2,572	2,537	1,832	1,599	2,187	58	12,658
1997	753	988	2,265	2,158	1,675	1,537	2,175	52	11,603
1998	592	696	1,638	1,608	1,304	1,286	1,888	55	9,067
1999	572	664	1,500	1,675	1,523	1,311	2,066	42	9,353
2000	589	722	1,637	1,704	1,671	1,432	2,455	26	10,236
2001	489	547	1,165	1,371	1,305	1,154	2,043	23	8,097
2002	468	399	1,002	1,111	1,186	979	2,064	13	7,222
2003	394	412	921	1,096	1,172	1,013	2,168	36	7,212
2004	296	314	797	849	1,214	873	2,183	37	6,563
2005	284	273	735	871	1,147	909	2,151	6	6,376
2006	276	289	701	808	1,144	970	2,136	3	6,327
2007	202	312	738	734	1,083	968	2,128	1	6,166
2008	161	259	729	657	1,032	918	2,074		5,834
2009	154	269	689	624	958	948	2,195	1	5,838

자료: 도로교통공단.

※ 1997~2009년 각 연도의 자동차보험 보상자 중 성별 연령별 사망자 수
- 보험개발원 교통사고 보상통계 연감 참조

〈부록 표 II-2〉 1997~2009년 각 연도의 모(母)의 연령별 신생아 수
(단위: 해당연령 여자인구 1천 명당 명)

연도	15~19세	20~24세	25~29세	30~34세	35~39세	40~44세	45~49세
1997	3.0	54.2	159.7	71.5	15.4	2.3	0.2
1998	2.8	48.3	152.1	71.2	15.2	2.3	0.2
1999	2.6	43.3	147.2	72.3	15.3	2.4	0.2
2000	2.5	38.8	149.6	83.5	17.2	2.5	0.2
2001	2.2	31.4	129.2	77.5	17.0	2.4	0.2
2002	2.6	26.5	110.9	74.5	16.6	2.4	0.2
2003	2.5	23.6	111.7	79.1	17.1	2.4	0.2
2004	2.3	20.6	104.5	83.2	18.2	2.4	0.2
2005	2.1	17.8	91.7	81.5	18.7	2.4	0.2
2006	2.2	17.6	89.4	89.4	21.2	2.6	0.2
2007	2.2	19.5	95.5	101.3	25.6	3.1	0.2
2008	1.7	18.2	85.6	101.5	26.5	3.2	0.2
2009	1.7	16.5	80.4	100.8	27.3	3.4	0.2

자료: 통계청.

〈부록 표 II-3〉 1992~2009년 각 연도의 성별 평균 초혼연령 자료

연도	여성	남성	차이
1992	24.9	28.0	3.1
1993	25.0	28.1	3.1
1994	25.1	28.2	3.1
1995	25.3	28.4	3.0
1996	25.4	28.4	3.0
1997	25.7	28.6	2.9
1998	26.0	28.8	2.8
1999	26.3	29.1	2.8
2000	26.5	29.3	2.8
2001	26.8	29.5	2.8
2002	27.0	29.8	2.8
2003	27.3	30.1	2.9
2004	27.5	30.5	3.0
2005	27.7	30.9	3.2
2006	27.8	31.0	3.2
2007	28.1	31.1	3.0
2008	28.3	31.4	3.1
2009	28.7	31.6	2.9

자료: 통계청.

〈부록 표 II-4〉 1997~2009년 각 연도의 자동차보험 보상자 중 중증후유장해자
(장해등급 1~5급) 수

(단위: 명)

연도	자동차보험금 보상자 중		
	사망자 수(A)	중증후유장해자 수(B)	B/A
1997	6,421	931	0.14
1998	5,249	877	0.17
1999	5,481	663	0.12
2000	5,941	785	0.13
2001	5,155	832	0.16
2002	4,774	745	0.16
2003	4,509	694	0.15
2004	3,944	666	0.17
2005	4,047	671	0.17
2006	3,995	659	0.16
2007	3,931	645	0.16
2008	3,822	619	0.16
2009	3,854	579	0.15
합계	61,123	9,366	0.15

자료: 보험개발원.

부 록 Ⅲ: 보험소비자 설문조사 결과

1. 2011년 보험소비자 설문조사 내용

♣ 다음은 보험금 지급 방법에 대한 질문입니다 ♣

문1. 만약 ○○님께서 상당한 액수의 보험 보상금을 지급받으신다면, ○○님께서 어떤 형태의 보험금 지급을 선호하십니까?

- ① 일시금 보상 ☞ 문2-1번으로 ② 정기금 보상 ☞ 문2-2번으로

문2-1. (문1에서 ①번 응답자만) 일시금 보상을 선호하시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한 가지만 말씀해 주십시오.

- ① 목돈이 필요해서
② 정기금 수령이 불편해서
③ 장기간 정기금지급을 믿을 수 없어서(보험회사에 대한 신뢰 부족)
④ 일시금을 받아 투자용도로 사용하고 싶어서

문2-2. (문1에서 ②번 응답자만) 정기금 보상을 선호하시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한 가지만 말씀해 주십시오.

- ① 가족(혹은 사망 시에는 유족)의 생계유지비로 안정적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② 일시금 수령 시 가족 간 불화의 원인이 되는 것이 우려되어서
③ 자녀의 교육비 등으로 안정적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④ 본인 사망 시 타인에 의한 갈취, 탕진이 우려되어서

문3. 사고로 인한 중증장애나 사망의 경우 상당한 액수의 보상금이 지급되고 있습니다. 만약 ○○님께서 상당한 액수의 보상금을 지급받으신다면 어떠한 형태를 희망하십니까? 보상금 규모에 따라 각각 응답해 주십시오.

선호형태 보상금 규모	일시금	일정기간 동안 나누어 지급(정기금)	일시금과 정기금을 섞어서
1) 1억	①	②	③
2) 3억	①	②	③
3) 5억	①	②	③
4) 5억 이상	①	②	③

문4. ○○님께서서는 자동차보험 약관에 ‘보험회사가 손해배상청구권자의 요청 시 보험금을 10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정기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① 예

② 아니오

2. 2011년 보험소비자 설문조사 결과

가. 정기금과 일시금의 선호도

정기금 선호 정도에 대한 분석결과 선호도에 가장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연령으로 나타났다. 또한 기혼이 미혼에 비해 높은 선호도를 보이고, 학력이 낮을수록 정기금에 대한 선호도가 높았으나, 결혼여부와 학력이 연령에 의해 크게 영향 받는 요소이므로 정기금에 대한 선호 정도는 연령에 영향을 받는다고 결론 지을 수 있다. 성별, 세대주 여부, 거주지역 규모에 따른 선호도의 차이는 보이지 않았다.

〈부록 표 Ⅲ-1〉 일시금 vs 정기금

(단위: 명, %)

구분		일시금		정기금	
전체		659	60.9	423	39.1
연령별	20대	134	64.4	74	35.6
	30대	156	67.0	77	33.0
	40대	154	64.4	85	35.6
	50대	215	53.5	187	46.5
성별	남	333	62.5	200	37.5
	여	326	59.4	223	40.6
결혼 여부	기혼	495	59.4	339	40.6
	미혼	164	66.1	84	33.9
세대주 여부	세대주	281	59.3	193	40.7
	비세대주	378	62.2	230	37.8
가족구성원 수	1명	37	60.7	24	39.3
	2명	53	61.6	33	38.4
	3명	124	59.9	83	40.1
	4명	368	60.5	240	39.5
	5명	67	67.0	33	33.0
	6명 이상	10	50.0	10	50.0
자녀 수	0명	203	64.0	114	36.0
	1명	100	61.0	64	39.0
	2명	305	58.4	217	41.6
	3명	44	65.7	23	34.3
	4명	6	54.5	5	45.5
	5명 이상	1	100.0	0	0.0
거주규모별	대도시	314	60.9	202	39.1
	중소도시	284	61.2	180	38.8
	군 단위	61	59.8	41	40.2
학력	중졸 이하	26	52.0	24	48.0
	고졸	340	58.9	237	41.1
	대졸 이상	293	64.4	162	35.6

나. 일시금 선호이유

일시금을 선호하는 이유는 투자용도, 목돈마련, 보험회사에 대한 신뢰부족, 정기금 수령의 불편함 순임.

〈부록 표-2〉 일시금 선호 이유

(단위: 명, %)

구분	응답자 수	목돈마련	수령불편	신뢰부족	투자용도	
전체	659	28.8	9.9	18.1	43.2	
연령별	20대	134	23.9	9.7	18.7	47.8
	30대	156	29.5	10.9	12.2	47.4
	40대	154	31.2	5.8	17.5	45.5
	50대	215	29.8	12.1	22.3	35.8
성별	남	333	26.4	10.5	18.0	45.0
	여	326	31.3	9.2	18.1	41.4
결혼 여부	기혼	495	29.9	10.3	19.0	40.8
	미혼	164	25.6	8.5	15.2	50.6
세대주 여부	세대주	281	28.1	9.6	18.1	44.1
	비세대주	378	29.4	10.1	18.0	42.6
가족구성원 수	1명	37	29.7	2.7	13.5	54.1
	2명	53	22.6	7.5	24.5	45.3
	3명	124	33.9	12.9	13.7	39.5
	4명	368	28.3	11.1	19.3	41.3
	5명	67	0.0	0.0	0.0	0.0
	6명 이상	10	0.0	0.0	0.0	0.0
자녀 수	0명	203	25.6	7.9	18.2	48.3
	1명	100	34.0	13.0	14.0	39.0
	2명	305	29.2	11.5	20.0	39.3
	3명	44	31.8	2.3	15.9	50.0
	4명	6	16.7	0.0	0.0	83.3
	5명 이상	1	0.0	0.0	0.0	0.0
거주규모별	대도시	314	28.7	11.1	19.1	41.1
	중소도시	284	29.9	8.5	18.3	43.3
	군 단위	61	24.6	9.8	11.5	54.1
학력	중졸 이하	26	30.8	26.9	19.2	23.1
	고졸	340	27.6	8.8	21.8	41.8
	대졸 이상	293	30.0	9.6	13.7	46.8

다. 정기금 선호이유

정기금을 선호하는 이유는 생계비, 자녀교육비, 가족의 불화, 갈취 및 탕진의 우려 순임. 학력이 높을수록 자녀교육비 때문에 정기금을 선호하는 비중이 커짐.

〈부록 표-3〉 정기금 선호 이유

(단위: 명, %)

구분	응답자수	생계비	가족불화	자녀 교육비	갈취, 탕진 우려	
전체	423	74.0	7.8	14.2	4.0	
연령별	20대	74	73.0	6.8	17.6	2.7
	30대	77	66.2	7.8	20.8	5.2
	40대	85	70.6	5.9	21.2	2.4
	50대	187	79.1	9.1	7.0	4.8
성별	남	200	76.0	6.5	13.5	4.0
	여	223	72.2	9.0	14.8	4.0
결혼 여부	기혼	339	73.5	8.3	14.5	3.8
	미혼	84	76.2	6.0	13.1	4.8
세대주 여부	세대주	193	77.2	7.3	10.4	5.2
	비세대주	230	71.3	8.3	17.4	3.0
가족구성원 수	1명	24	79.2	4.2	0.0	16.7
	2명	33	84.8	6.1	3.0	6.1
	3명	83	78.3	6.0	10.8	4.8
	4명	240	70.8	8.8	18.3	2.1
	5명	33	69.7	12.1	12.1	6.1
	6명 이상	10	80.0	0.0	20.0	0.0
자녀 수	0명	114	76.3	6.1	11.4	6.1
	1명	64	81.3	3.1	10.9	4.7
	2명	217	69.6	9.7	17.5	3.2
	3명	23	78.3	13.0	8.7	0.0
	4명	5	100.0	0.0	0.0	0.0
	5명 이상	0	0.0	0.0	0.0	0.0
거주규모별	대도시	202	80.2	4.5	12.4	3.0
	중소도시	180	70.0	12.2	12.8	5.0
	군 단위	41	61.0	4.9	29.3	4.9
학력	중졸 이하	24	83.3	4.2	4.2	8.3
	고졸	237	73.0	8.9	13.9	4.2
	대졸 이상	162	74.1	6.8	16.0	3.1

